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·공포(법률 제22122호, ‘26.10.27.)됨에 따라,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시행규칙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1. 12. ~ 12. 22.)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1항제1호 중 “연구·개발을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하거나”를 “연구·개발 또는”으로, “제조하는”을 “제조하거나 수입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연구·개발”을 “연구·개발 또는 수출”로 한다.

별지 제43호서식 제2호 중 “연구·개발”을 “연구·개발 또는 수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9조(안전인증의 면제)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(이하 “안전인증대상기계등” 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. 1. 연구·개발을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. ~ 12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1. (생 략) 2. 연구·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	제109조(안전인증의 면제) ① ----------. 1. 연구·개발 또는 ----------제조하거나 수입하는 ---------- 2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연구·개발 또는 수출----------

④ (생　략)	④ (현행과 같음)